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업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11
------	------

발의일자 : 2023. 3. 10.

발 의 자 : 업셋별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5조).
- 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조례안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23. 3. 11. ~ 3. 17.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저소득자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화 및 창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